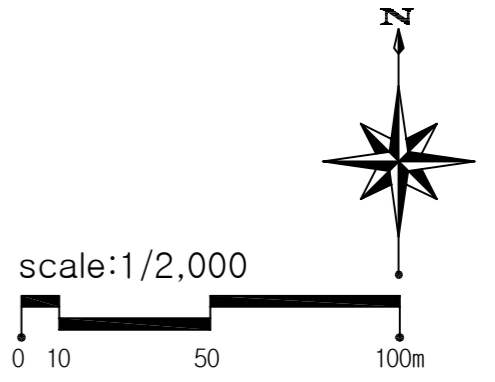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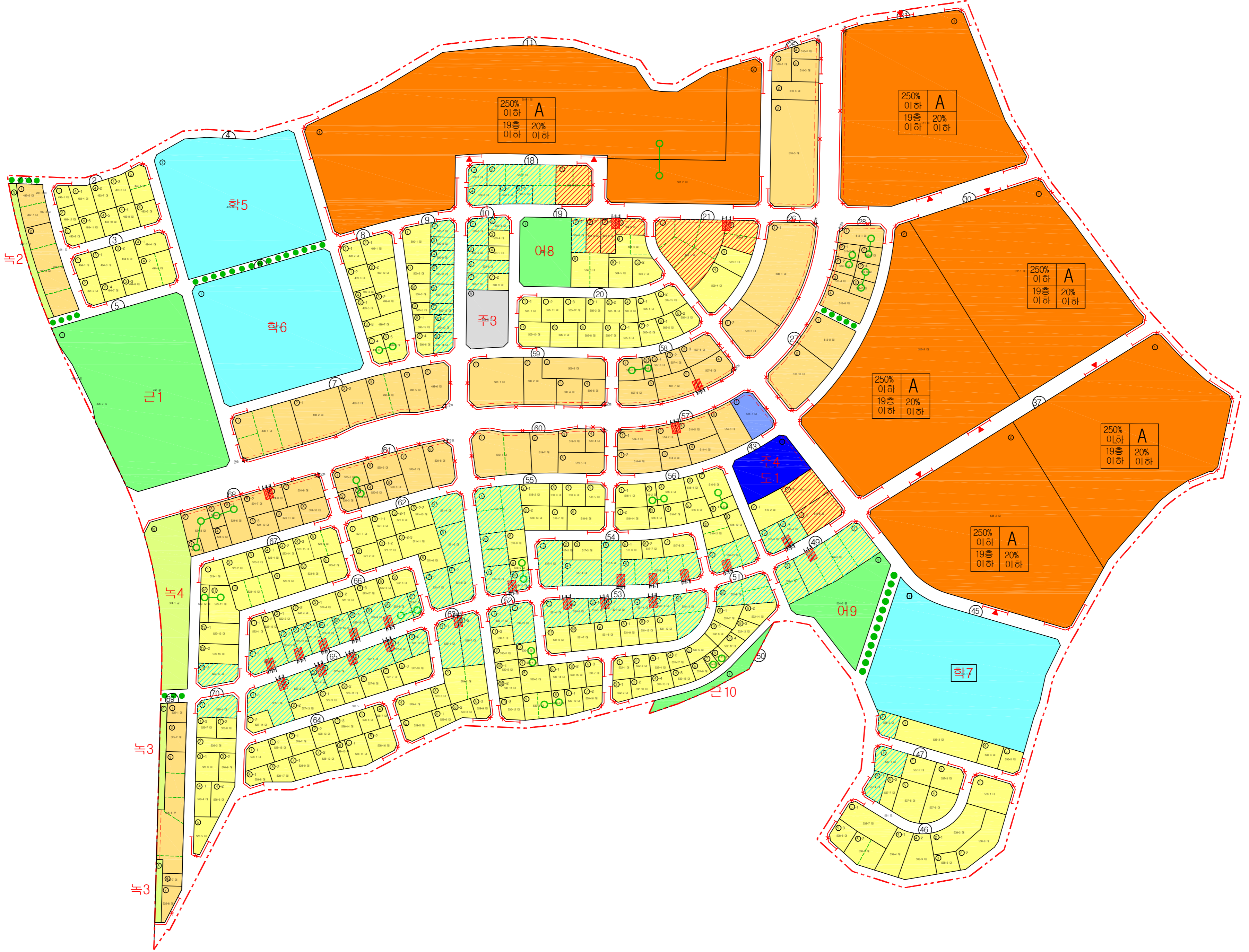


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 2012-호
서기 2012년 월 일

본 도면은 변경으로 명시된 부분만이 유효함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서구청 도시개발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직위	-	도시개발담당	-	도시개발담당
직명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성명	김유민	김영준	김유민	김영준
확인인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개발(경장)
	획지경계선		주차통로(유도)
	건축한계선		용도
	대지분할가능선		적용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
	주차출입구		적용
	보행자전용도로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건축물의 용도전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구분	A	B	C1	C2	C3	D	E	F	G
건폐율	2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30%이하	50%이하	-	-
용적률	250%이하	250%이하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150%이하	200%이하	-	-
높이	19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지정식	-
지정용도	주택법에 따른 - 공동주택중 아파트	-	-	-	-	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도서관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단독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단상주점, 육상경기장(체육관), 문화시설, 단상주점, 육상경기장(체육관) 제외) - 공공시설(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제외) - 위생시설 및 보건시설 중 - 석유 및 석유기스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단독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제외) - 공공시설(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제외) - 위생시설 및 보건시설 중 - 석유 및 석유기스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단독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제외) - 공공시설(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제외) - 위생시설 및 보건시설 중 - 석유 및 석유기스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단독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제외) - 공공시설(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제외) - 위생시설 및 보건시설 중 - 석유 및 석유기스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단독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편의시설 제외) - 공공시설(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제외) - 위생시설 및 보건시설 중 - 석유 및 석유기스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	-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권장용도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차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학교보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관련업무수행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안법 제6조에도 해당되는 용도 								

주1) - 식재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장은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주4) 단독주택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경사지면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평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한다)
주5) 지평의 높이는 경사지면을 유도하여 다른 형태의 지평을 허가증지의 길이를 미연도록 할
주6) 가설건축물 제련(단, 중시원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주7) 권장용도(C1, C2, C3)는 도로 폭면의 따라 경향하고 있으나 도로 모퉁이(도로폭면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면이 큰 곳에 접하는 도로면의 용도별 허용
주8)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작은 도로에 접할 경우, 작은 도로면의 용도별 허용